

##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

사 건 2000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

채 권 자 ㅇㅇㅇ

채 무 자 주식회사◇◇◇

제3채무자 1.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

- 2. ●●엔진공업주식회사
- 3. 주식회사■■

위 당사자간 귀원 20○○타채○○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- 1.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
- 2.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
- 3.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
- 4.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				ō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	제237조째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
비 용	· 인지액 : 없음 · 송달료 : 불첩부			
기 타	·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의 ·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 ·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않음), 압류 및 추심명령 · 신청한 채권자, 가압류채를	위 각 호의  L로 진술최고신  의 발송 전에 하  경우에만 제  고를 할 수는 없  압류채권자(배명	사항을 진술 청은 적어도 나여야 함. 3채무자에게 \음. 강요구채권자	하게 하도록 압류명령과 진술최고를 는 포함되지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